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의뢰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사법보좌관 김범석
건명	윤성식 소유물건(2026타경50148)
감정서번호	가람 1826-05-21003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사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가람감정평가법인 호남지사
KAARAM APPRAISAL CO., LTD.
TEL:061)375-6540 FAX:061)375-6542

(선박)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조 병 혁

(인)

(주)가람감정평가법인 호남지사 지사장 서 승 재

(인)

감정평가액	육천칠십오만팔천팔백사십원정(₩60,758,840.-)			
의뢰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사법보좌관 김범석	감정평가목적	경매	
채무자	-	제출처	경매2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윤성식 (2026타경50148)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등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6.06.02	2026.06.02	2026.06.02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원/㎡)	금액(원)
	선박	1척	선박	1척	-	60,758,840
			이 하 여 백			
	합계					₩60,758,840

심사 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인)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 건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면 소재 “해조류센터” 북측 인근 공해상에 정박 중인 동력선 산정호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의 경매목적에 위한 감정평가 건임.

2. 감정평가의 대상 물건

※선박

기호	어선명칭	조선자	수량	진수년월일
1	산정호	대운조선소	1척	2001.07.20

3.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기간

가.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6년 06월 02일임.

나.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내용

대상은 2026년 06월 02일 현장을 방문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음.

4.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의 조건

가. 기준가치

본 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감정평가의 조건

없음.

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건 선박은 기준시점 현재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소재 “해조류센터” 북측 인근 공해상에 정박중인 것을 실사하였음.

나. 본 건 선박에 견고히 부착되어 설치된 조타기, 선박기본설비, 어획창고, 형망설비 등은 선체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는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다. 본 건 선박은 기준시점 현재 정상적인 작동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여 정상작동을 전제로 감정평가하였는바, 경매 진행시 정상 작동 여부는 재확인하시기 바람.

라. 귀 제시목록상 어업허가에 대하여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기준시점 현재 본 건 선박은 어업허가(주어업 : 연안복합어업)를 득하고 있으며, 수산업법 제44조 제1항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는 그 어업허가를 받는 자의 지위를 계승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통상 어선 및 어업허가가 일체로 거래되나 어선 또는 어업허가만의 거래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귀 원 요청에 의거 어업허가는 별도로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일괄처리 여부 등은 재확인하시기 바람.

마. 본 건 선박의 어업허가는 어업허가대장상 주어업(완도군 연안복합어업 제2024-00207호), 허가기간 2024.01.01.~2028.12.31.로 확인 되었는바, 경매 진행시 허가사항은 재확인하시기 바람.

바. 본 건 선박 어업허가대장상 타인 소유의 어업허가(폐류형망어업)가 등재되어 있으니, 경매 진행시 허가사항은 재확인하시기 바람.

사. 기준시점 현재 본 건 선박의 어업허가사항은 유효한 것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감정평가 방법 및 절차

1.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및 감정평가 방법

가.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등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 관계 법령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음.

나. 감정평가 관련 규정의 검토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자동차 등의 감정평가)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에 선체·기관·의장(艙裝)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되, 각각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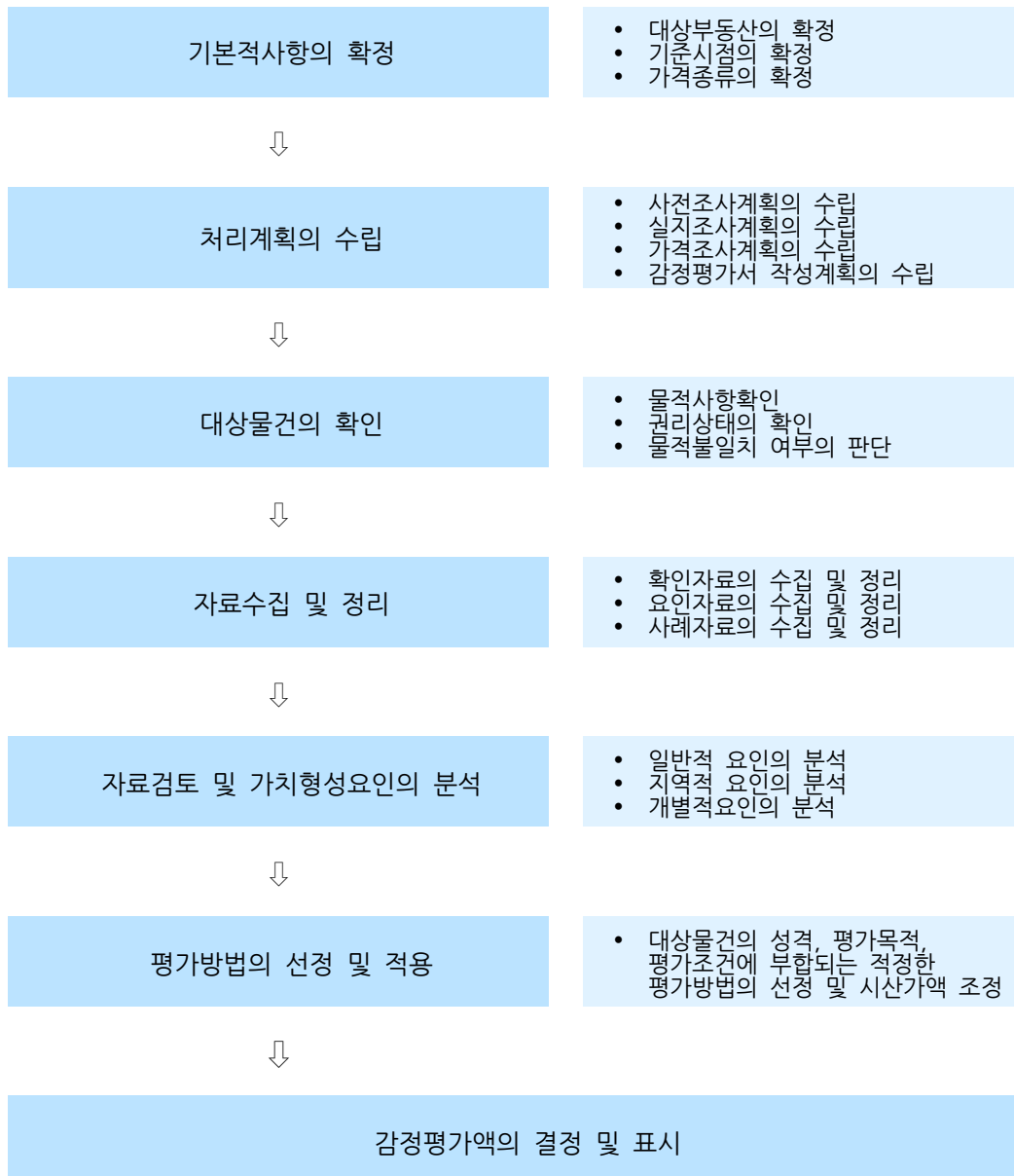
다. 본 건에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선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20조 등에 의거 구조, 규격, 형식 등을 종합 참작하여 선체, 기관, 의장 별로 주된 평가방법인 “원가법” 외에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하되, 선체, 기관, 의장품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였고, 일부는 제조년월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감안하여 관찰감가법을 병행하였으며, 어업허가는 거래사례 등을 감안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감정평가 절차

본 감정평가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를 근거로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작성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I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1. 감정평가액의 결정

구 분	수량	단가(원/㎡)	감정평가액(원)
선박	1척	-	20,758,840
어업허가	1식	-	40,000,000
합 계			60,758,840

2. 감정평가액의 결정에 관한 의견

본 감정평가액은 시장의 거래가격 추이, 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비용, 대상 물건과 현상, 성능 등이 유사 한 물건의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물건의 시장성 등 평가목적을 고려할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됨.

선박 감정평가 명세표

선박명칭		산정호		선박번호	0107001-6461102		선 적 항	완도군 완도읍		
구 분		적재용량 및 수량		평 가 액(원)		산 출 근 거				
				단 가						
선 체		4.97	G/T	2,772,000		13,776,840		22,000,000 x 0.126(2/20)관찰감가		
기 관		355	PS	19,000		6,745,000		140,000 x 0.136(2/15)관찰감가		
의 장 품		2	점	-		237,000		선박의장품 및 어업허가 감정평가 명세표 참조		
어업허가		1	식	-		40,000,000				
합 계						60,758,840		잔가율(선체 : 10%, 기관 : 10%)		
선 박 의 내 용										
선 체	종 류	동력선			선 형	-		척 도		
	용 도	어선(연안복합어업)			총 톤 수	4.97	G/T	길이 :	9.90 M	
	등 급	-			순 톤 수	-	N/T	너비 :	4.55 M	
	선 질	FRP			적화톤수	-	DWT	깊이 :	0.79 M	
	선 창	-			조 선 소	대운조선소		비 고		
	객 실	-			건조년월일	-		-		
	승무원실	-								
조 선 지	전라남도 목포시			진수년월일	2001.07.20					
기 관	종 류	선박용디젤기관			기 통 수	-	CYL	제 작 소		
	실 마 력	-	PS	회 전 수	1,800	RPM	커민스			
	공칭마력	355	PS	기 통 경	-	m/m	제조일자 및 번호			
	형 식	-		행 정	-	m/m	미상/471018577			
	속 력	-	Knots	보조기계 및 기관의 종류와 수량			비 고			
	추진기의 종류 및 수 량	나선일체식 추진기 1기			선박의장품 감정평가 명세표 참조			-		

선박의장품 및 어업허가 감정평가 명세표

일련 번호	명칭 (종류) 구조.규격.형식.용량	제 작 자 제 작 번 호 제작(취득)일자 수입 신고 일자	수 량	감 정 평 가 액(원)		비 고
				단 가	금 액	
	< 의장품 >					
1	해상용네비게이션 Model : GMT-EYENAVI	GMT 2013.08	1식	-	237,000	1,500,000 x 0.158(3/15)
2	형망설비 폐류형망 형망틀/형망derrick 유압Roller Conveyor : (L)2m/(W)0.6m (L)2m/(W)0.35m (L)3m/(W)0.4m 자동선별기 : (L)4.2m/(W)0.4.5m 기타부대설비일체	국산 미상	1식	-	-	선체에포함평가

선박의장품 및 어업허가 감정평가 명세표

일련 번호	명칭 (종류) 구조.규격.형식.용량	제 작 자 제 작 번 호 제작(취득)일자 수입 신고 일자	수 량	감 정 평 가 액(원)		비 고
				단 가	금 액	
1	< 어업허가 > 주어업 허가번호 : 완도군 연안복합어업 제2024-00207호 어업의 종류 : 연안복합어업 조업방법 어구의명칭 : 연안복합어업 조업구역 : 전라남도 연안 일원 어업의 시기 : 01.01~12.31 포획,채취등의종류 : 기타 해면어류 허가기간 : 2024.01.01~ 2028.12.31	-	1식	-	40,000,000	
합 계					₩40,237,000	
		이 하 여 백				

선박감정평가요항표

1. 선체의 현황

2. 기관의 현황

3. 의장품의 현황

4. 운항상황

5. 기타 참고사항

1. 선체의 현황(Current State Of Hull)

본 건 선체는 FRP를 주재료로 하여 건조되었으며, 선수로부터 조타실 및 기관실, 선미 등으로
구획된 단저구조의 동력선이며, 2001년 07월 20일 진수된 총톤수(G/T) 4.97톤, 최대승선인원
8명으로,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해조류센터” 북측 인근 공해상에 정박 중이며, 선체
의 제 현상 및 관리 상태는 보통임.

2. 기관의 현황(Current State Of Engine)

본 선에 설치된 주기관은 355PS 선박용디젤기관 기관 1기이며, 제반현상 및 관리상태는 보통임.

3. 의장품 현황(Current State Of Ship Equipments)

본 선에 설치된 의장품은 해상용네비게이션 및 형광설비 등으로 본 선의 운항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설비들로서, 제반 상태는 보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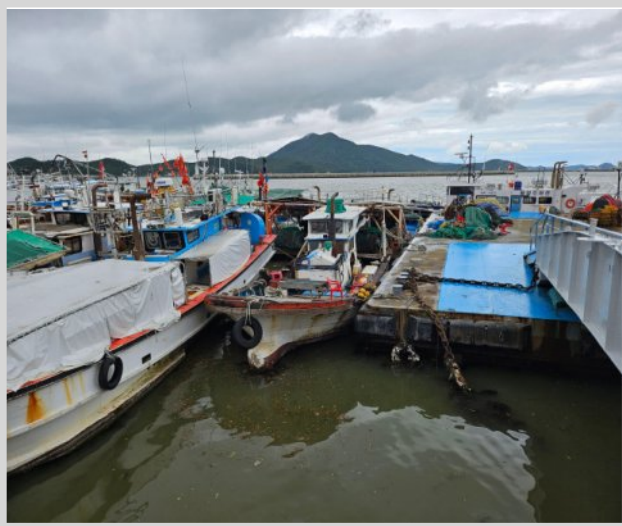
4. 운항상황(Shipping Service)

본 선은 어업허가대장상 어선(연안복합어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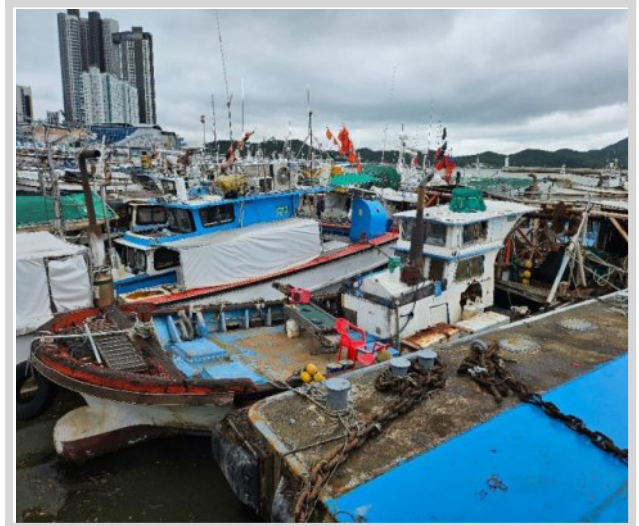
5. 기타 참고사항(Other Findings)

본 선의 어선검사증서의 검사유효기간은 2021년 07월 23일부터 2026년 07월 22일까지인바,
경매 진행시 유의하시기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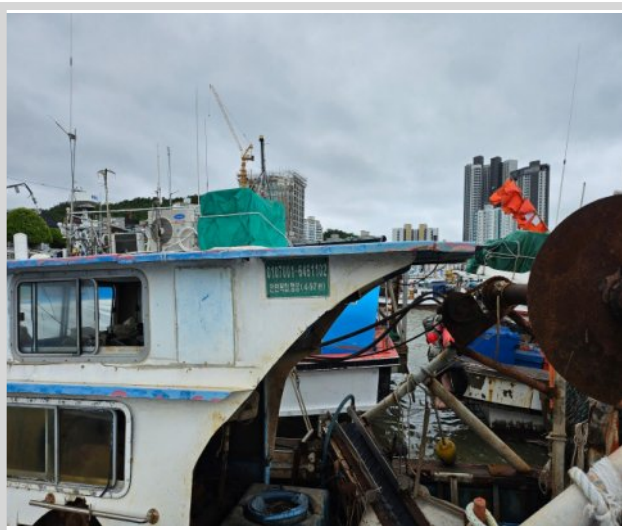
사 진 용 지



본 건 주위환경



본 건 선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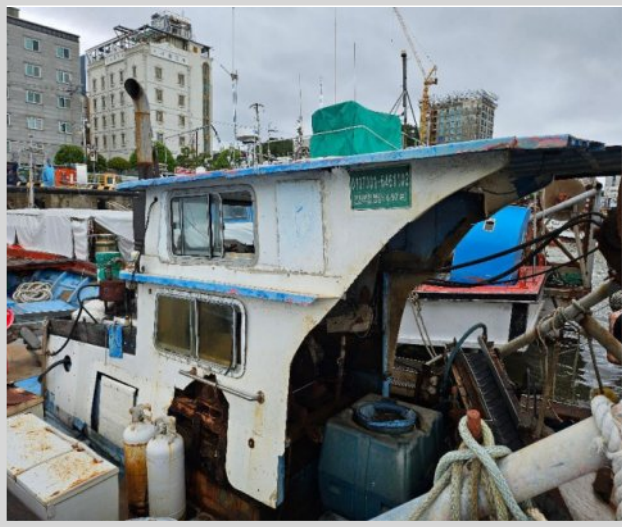


선박표시부



주기관

사 진 용 지



조타실



조타실 내부



의장품 1



의장품 2

사 진 용 지



의장품 2



의장품 2



의장품 2



의장품 2